

김 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파생상품감독팀장)

1. 파생결합상품의 불완전판매 관련

- 대중적 인가를 끈 파생결합상품이 2016년 2월 HSCEI 급락에 따라 녹인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투자위험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금융위와 함께 판매 관련 제도를 개선
- 투자숙려제도를 도입하고, 투자광고규제를 강화하였으며, 녹취의무는 2018년 1월부터 시행 될 예정
- 불완전판매에 따른 제재는 과거 임직원에 대한 신분상 제재에서 탈피하여 금전적 제재 및 기관에 대한 제재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이미 추진 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
- 국회에 제출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도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이 반영되어 있는바, 금융기관이 불완전판매에 따른 수익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수익금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억원 한도로 과징금 부과가능).
-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회사의 입증책임도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는 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는 금융회사가 상품판매시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여 입증책임이 전화되어 있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2. 불공정거래 관련

-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법무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음. 현재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함.
- 불공정거래 규제대상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금융시장의 발달에 따라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